



# 2024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2024.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 등 교 육 과

## 목 차

- I. 목 적 ..... 1
- II. 법적 근거 ..... 1
- III. 학적처리에 사용되는 용어 ..... 2
- IV. 고등학교의 구분 ..... 3
- V. 방 침 ..... 4
- VI. 전·편입학 대상자 ..... 7
- VII. 전·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 범위 ..... 8
- VIII. 전·편입학 허용시기 ..... 9
- IX. 정원관리 ..... 10
- X. 전·편입학 절차 ..... 11
- XI.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 12
- XII. 기타 사항 ..... 14
- XIII. 부 칙
  - (별지1) 전·편입학 제출서류 목록 ..... 16
  - (별지2) 구비서류 목록(귀국자용) ..... 17
  - (별지3)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시행 계획 ..... 18
  - (별지4) 고입전형 일반고 합격자 중 입학 전 타시·도 전출 희망자 업무처리 요령 ..... 22
  - (별지5) 타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일반고 합격자) 중 강원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입학 안내 ..... 23
  - (별지6)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 ..... 25
  - (서식1) 강원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용] ..... 28
  - (서식2) 재(전·편)입학 지원서 ..... 29
  - (서식3) 입학 지원서 ..... 30
  - (서식4) 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 ..... 31
  - (서식5) 고등학교 (신·편)입학 신청서(귀국자용) ..... 32
  - (서식6)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 34
  - (서식7) 학력인정 신청서(북한이탈주민용) ..... 35
  - (서식8)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신청서 ..... 36
  - (서식9\_1)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 37
  - (서식9\_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 38
  - (서식10\_1) 학교장 의견서(학교폭력 가해학생용) ..... 39
  - (서식10\_2) 학교장 의견서(교육활동 침해학생용) ..... 40
  - (서식11)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학폭피해자 등) ..... 41
  - (서식12) 보호자 및 학생 동의서(학폭피해자 등) ..... 42
  - (서식13\_1)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학교 배정결과통지서 ..... 43
  - (서식13\_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학교 배정결과통지서 ..... 44
  - (서식14)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 45

#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 I 목 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 II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편입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준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민법 제909조(친권자) 및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취학시킬 의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추진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기능)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칙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위한특별법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예에관한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 댜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III 학적처리에 사용되는 용어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의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의학적관리’ 할 수 있음)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 IV 고등학교의 구분

### □ 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일반고)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목고)
  -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
  - 자율고등학교(자율고)로 구분함 (동시행령 제76조의3)
1. 일반고등학교 :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동시행령 제90조) :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3개 계열로 정비되었음]
  3. 특성화고등학교(동시행령 제91조)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동시행령 제91조의3, 4) :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통틀어 일컬음]

## V 방침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동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등에서의 전입학을 불허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기타 전출입 가능학교: 재외한국학교,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 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2.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학력인정 각종학교와의 전입학을 불허한다.
3. 고등학교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계획**」(별지3)에 의거하여 학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98조의4)
4.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이나 그 이하 학년으로 한다. (동시행령 제74조)
5. 자퇴·퇴학한 학생은 원적교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다.
6. 타시·도 및 타시·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편입학 시 동일계열로의 전·편입학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7.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거주지 이전 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각종 증빙서류 첨부)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의뢰할 수 있다.(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전학 권고’를 받아서는 안 됨)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는 (별지6)에 따름
8.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교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전입하려는 학생의 성적부진 및 출결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 해당학년 재·전·편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재·전·편입학 허가할 수 있다. (동시행령 제50조)
- 전입학의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인 되는 경우에만 해당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9.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귀국자 편·입학 업무 처리 지침’에 준하여 학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전·편입학을 허용한다.
10. 동시행령 제89조2에 따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전·편입학은 다음의 절차에 따르며, 공교육 진입과 적응의 어려움, 학생의 성취도 수준, 문화적 다양성, 종교, 정주여건 불안정 등의 사유로 전·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 가. 국내 및 국외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가 발급 가능하고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및 귀국자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 상의 귀국자 편입학(특례 편입학이 가능한 경우 특례 편입학 처리 등)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나. 미등록 이주아동(난민, 불법체류 등 포함) 등 국내 및 국외의 교육과정 이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의 나이,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전·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참고]

○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등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2022. 3. 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22. 4. 23. 시행)

○ 다문화학생 유형(출처: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_교육부)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 가정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 이주아동: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아동 또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
- 미등록 이주아동: 이주아동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적법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지 않은 아동

11.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해야 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에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12.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13.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여부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한다.
14. 학교장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의 전입을 배정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정 후 일주일 이내 전학처리를 완료한다. 다만, 배정받은 학교에 폭력 피해학생이 재학중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재배정할 수 있다.  
(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8호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15.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를 교육감에게 전학 조치 요청한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타 학교에 우선하여 교육감의 전입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16.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희망 지역에 관계없이 전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 단,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처리된 자는 전학일 기준 1년 이내에는 원적교 또는 원적교 소재 시(군)단위 학교로 전입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는 원적교 소재 시(군)단위의 학교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17.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은 별도(별지6)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18.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 등이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그 지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편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허용 범위는 정원과 시기, 계열구분에 상관없이 피해자 전원이며, 전·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9. 교육감(학교장)은 교원의 재직학교에 자녀가 배정 또는 입학(재학 포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정원 외 배정 또는 전입학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하며, 교육감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VI 전·편입학 대상자

1. 타시·도 소재 일반고, 특목고, 특성학교, 자율고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고 전가족 거주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거주지라 함은 「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가족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3.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하여 강원특별자치도내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하는 자
5. 강원특별자치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6. 기타 천재지변 및 재난에 의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7.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의 전학 처분을 받은 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자
8.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대상자 (별지6)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에 따름
9.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거주지 이전 없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10. 교원인 부모의 재직학교에 배정 또는 입학(재학 포함)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VII 전·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 범위

### 1. 정원 외 허용 대상자 및 범위 (동시행령 제51조)

- 가. 유급생 : 전원
- 나. 재입학 또는 퇴학한 자의 편입학 : 전원
- 다. 국가유공자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 라. 군인(군속)자녀로서 보호자가 소속된 군부대 주둔지역 이동으로 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 마. 해양경찰관 자녀로서 보호자의 근무지역 이동으로 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 바. 수몰지역 이주 학생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직원자녀로서 보호자의 근무지역 이동으로 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5%이내  
 ※ 위 '라~사'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학년 정원의 5%를 넘을 수 없다.
- 아. 타시·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의 자녀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이 확정된 자로서 부모의 직장이동, 사업장의 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을 달리하여 이전된 자 : 해당학년 정원의 5%이내(단, 강원특별자치도내 전입학자는 해당학년 정원의 2%내에서 운영)
- 자.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 차. 귀국학생(인정유학자)
  - 일반 귀국자 : 해당 학년 정원의 3% 이내
  - 특례입학대상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
- 카.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타.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학교에서는 편입학으로 처리)

## 2. 정원 내 허용 대상자 및 범위

- 가. 전 가족 주소이전 없이 학생이 졸업한 중학교 소재지 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출신 중학교 소재지 고등학교로 전학을 요청한 경우  
(단, 지역 내에 전입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1개교만 있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 나. 체육특기자(추가전입자)는 학교 정원 내에서 전편입학 가능  
※ 체육특기자 신입생 정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학생으로 정원 배정
- 다. 그 외의 경우

## VIII 전·편입학 허용 시기

1. 고등학교 1학년의 입학: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학생이 신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  
(서식3, 입학 지원서)  
※ 당해 연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 정원 내 입학 가능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가능)
2.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가. 일반계열 :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대안계열고등학교(팔려고, 전인고, 현천고)  
나. 직업계열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직업계열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다. 예술계열 : 일반고등학교의 예능계열, 예술고등학교  
라. 체육계열 : 일반고등학교의 체능계열, 체육고등학교  
※ 학교의 유형과는 별도로 전편입학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학교 간의 전입학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으로 간주
3.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단, 해당지역에 동일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편입 가능 : 1학년 2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4. 귀국학생의 편입학 : 3학년 10월까지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 참조]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1개월 이내로 편입학 하며,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

학한 동일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 나.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5. 퇴학(사퇴)한 자의 재·편입학 : 3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단, 학년은 퇴학(사퇴)당시 학년이나 그 이하 학년에 한한다) (동시행령 제74조)  
\* 편입학의 경우 동일계열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하고, 다른 계열은 1학년 2학기까지 허용
  6. 학교폭력 가해자, 교권침해 가해학생,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전입학 시기 및 계열 제한 없음
  7.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①항에 해당하여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입학 시기 제한이 없음.
- 성적산출 직전까지란 재적학교와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 모두 학기말고사(1학기 2회고사)를 실시하기 전까지임
  - 거주지 이전에 의하여 전·편입학이 부득이 하고, 해당 지역에 동일유형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그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IX 정원 관리

1. 정원 외 관리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 경우  
가. 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 학년 정원의 3%이내  
나. 동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한 특례입학대상자,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 해당 학년 정원의 2%이내  
다. 동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한 일반귀국자(인정유학자) : 해당 학년 정원의 3%이내  
라.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해당 학년 정원의 2%이내

## 2.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관리

가. Ⅶ / 1 / 가~자에 의거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나. Ⅶ / 2 / 읍·면 지역의 전입학이 유일한 학교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다. 비밀전학(가정폭력, 성폭력 등) 지원 관계법령에 의거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나. 전입학교 배정 통보(전입교, 전출교)

다. 이후 절차는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6. 교육활동 침해자의 전입학 절차

가. 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관련 서류 제출(서식 9-2, 10-2 및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사실 내용)

나. 전입학교 배정 통보(전입교, 전출교)

다. 이후 절차는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7.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별지6, 서식14)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계획에 따름

# X 전·편입학 절차

## 1.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가. 전출 상담 및 절차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 특정 형식 없음

나. 전입학신청서 제출 : 서식 별첨(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다. 전입학 동의 :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편·재입·복학생관리 -전입생자료 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마.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바.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 2.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가.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원재적학교) → 학교장의허가(원재적학교) → 재입학 수속

나.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 → 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 → 편입학 수속(편입학 수속은 X / 1 / 다~바 전입학 절차에 준함)

## 3. 귀국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 허가 → 편입학 수속(편입학 희망학교)

## 4. 고등학교 학년 결정 편입학 절차

○ 학년결정 입학 신청(입학 신청자 → 입학 희망학교) → 학교장 허가(‘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결정사항 통보) → 편입학 수속(입학 희망학교)

## 5.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입학 절차

가.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관련 서류 제출(서식 9-1, 10-1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사실 내용)

※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 원적교 소속 시·도교육청의 공문 및 관련 서류 요청

# XI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 1. 공통 기본서류

가.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서식2)

나. 재학(자퇴, 제적 등)증명서 1부

다.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라.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자료(학교생활기록부 누가 기록을 위한 증빙자료)

마. 전 가족의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거주지 확인 절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가능, 등본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철저)

1) 교육환경 전환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

2)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직장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부

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상세)기본증명서(학생) 1부,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및 전학 위임내용 기재) 1부

라)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1부

- 2008. 01. 01.이후 신고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마)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각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 이혼한 경우에 준하는 서류 제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참고사항

-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부 또는 모가 세대주)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자녀)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기재출한 서류로 전·편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부(서식11)
- 나. 관련 증빙자료(학교폭력 심의자료, 상담관련 자료, 학교장의견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전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타 증빙 자료 등) 일체
- 다.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서식12)

4.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인 학생

- 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나.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다.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라.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 학생에 한함)
- 마. 외국체류 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귀국 학생에 한함)
- 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정부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사.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1부(서식6,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자. 기타 사유에 합당한 증빙서류

5. 군인(군속) 자녀, 해양경찰관 자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자녀 : 재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부

6.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학력인정 신청서(서식7) 1부

7.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8. 학교폭력 가해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 가.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서식9\_1, 9\_2)

나. 학교장 의견서 1부(서식10\_1, 10\_2)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1부(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 사본 1부(교육활동 침해자일 경우)

9.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제출서류 (별지6)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에 따른

10.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 비밀전학 학생

- 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

## XII 기타 사항

가.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 대상자의 허가 시기와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학교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서류의 허위 기재, 거주지 위장전입 사항 등 제출 서류의 흠이 발견된 때에는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의 장은 전·편입학을 허가한 전·편입학자의 학력조회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전·편입학시 해당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여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전·편입학을 허가하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마. 고등학교는 12월 이후부터 2학기말 사정회 전까지의 전입학 학생이 전출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성적이 미기재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출근거조항을 평가규정에 삽입하고, 전출교에 성적 산출 자료(성적증명서, 수행평가 자료, 봉사활동 누가 기록 등)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바. 전·편입학 및 재입학 등 업무에 관하여 협의할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내에 입학추진관리위원회 규칙에 근거한 “전편입학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II 부 칙

1. 본 지침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 업무시행에 관련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준한다.

- 붙임 1. (별지1) 전·편입학 제출서류 목록
2. (별지2) 구비서류 목록(귀국자용)
  3. (별지3)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시행 계획
  4. (별지4) 고입전형 일반고 합격자 중 입학 전 타시·도 진출 희망자 업무처리 요령
  5. (별지5) 타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일반고 합격자) 중 강원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입학 안내
  6. (별지6)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
  7. (서식1) 강원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용]
  8. (서식2) 재(전·편)입학 지원서
  9. (서식3) 신입학 지원서
  10. (서식4) 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
  11. (서식5) 고등학교 (신·편)입학 신청서(귀국자용)
  12. (서식6)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13. (서식7) 학력인정 신청서(북한이탈주민용)
  14. (서식8)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신청서
  15. (서식9\_1)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16. (서식9\_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17. (서식10\_1) 학교장 의견서(학교폭력 가해학생)
  18. (서식10\_2) 학교장 의견서(교육활동 침해학생)
  19. (서식11)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학폭피해학생 등)
  20. (서식12) 보호자 및 학생동의서(학폭피해학생 등)
  21. (서식13\_1)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학교 배정결과통지서
  22. (서식13\_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학교 배정결과통지서
  23. (서식14)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별지1)

## 전·편입학 제출서류 목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공동 기본서류	유공 자녀	군인(군속) 자녀 해양경찰관 자녀	수물지역 이주자녀	교육환경 전환자	학교폭력 가해자	비고
재학(자퇴,제적)증명서	○						
학교생활 기록부전산자료 (보조자료 포함)	○						
건강기록부 전산자료	○						
재·전·편입학 지원서	○						서식2
주민등록등본	○						전가족 전·현주소 등재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시 미제출(적극 권장)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					
보호자 및 학생 동의서					○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		
관련증빙자료 (상담기록부, 학교장의견서 등)					○		
재직 증명서			○				
이주 대상 증명서				○			
가해학생전학학교 배정요청서						○	
학교장 의견서						○	

(별지2)

## 구비서류 목록(귀국자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제3항 각호 해당자

구비서류	특례입학 대상자					일 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제2호가족)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가족)	북한탈주민 (제3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 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증명서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우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단,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학교는 아포스티유 필요 없음)
국내 최종학교 재학 (제적, 졸업) 증명서	(○)	(○)				○	최종 재학 년월일 및 최종 재학 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출력물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중 1인, 재학생 또는 면담)	(부, 모 학생)		(부, 모 중 1인, 학생)	(부, 모 중 1인, 학생)	(학생)	범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면) 행정복지센터
호적 등본				○	○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증서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귀국 일자 이후 발행
○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영주권 (시민권) 사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특례대상자만 제출 (부, 모 학생)					(부, 모 중 1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동(면) 행정복지센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 특례대상자만 제출 (부, 모 학생)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교과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 모 학생)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동(면)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해당 행정시(군)경찰청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시(군)경찰청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해당 행정시(군)경찰청
편입학신청서	○	○	○	○	○	○	해당학교 서식 활용
취학아동예비접종증명서	○	○	○	○	○	○	인터넷(민원24),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별지3)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시행 계획

1.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2. 학년결정 입학 대상

※ 전 가족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 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단, 2학년 1학기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학교 외 학습경험이 있는 자만 허용

나. 국내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단, 학원 등 사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경험은 제외)

※ 1년 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만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3. 학년결정 입학 신청 시기 및 자격 요건

가. 신청 시기 : 매학기 일정 기간

1) 원서 접수 : 학기 시작 20일전 까지

2) 서류심사 및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 원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나. 입학 신청 자격

1)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 경험 1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인 자의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은 불가함.

2)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 1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 경험이 3학기(1년 1학기) 이상인 자.

3) 3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 2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 1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3학기(1년 1학기)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 경험이 4학기(2년) 이상인 자.

※ 3학년 2학기에 입학은 「강원특별자치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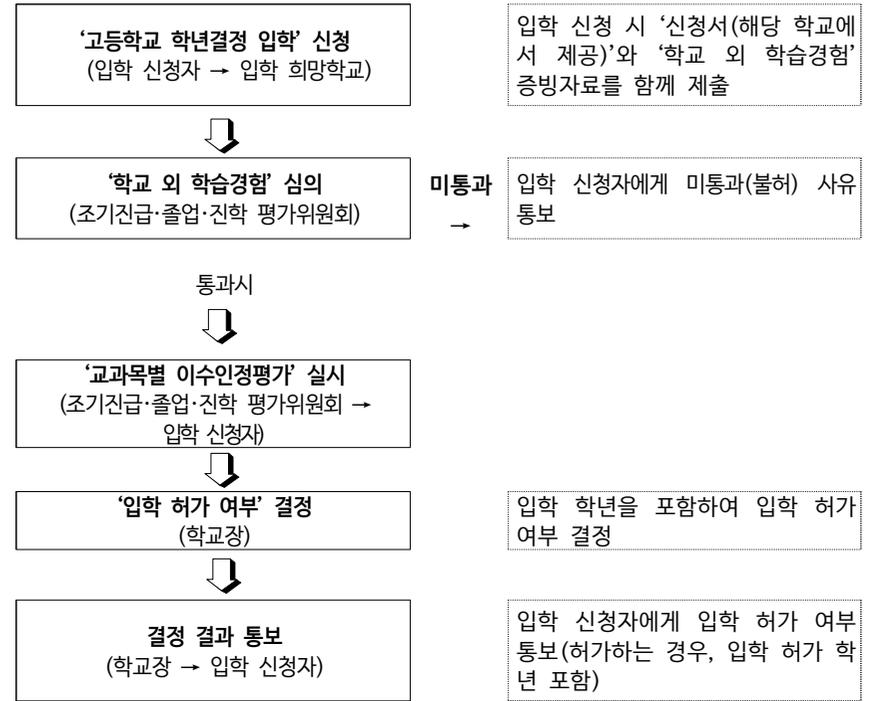
#### 4. 학년결정 입학 원칙

-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은 고등학교 2.3학년에 한하여 허용한다.
- 나. 입학 학생 수 허용 범위는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 다.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5. 학년결정 입학 절차

- 가. 입학신청자는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 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서식8)'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재학(자퇴, 재적)증명서, 기타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고,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입학신청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 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에서 통과한 입학신청자에게 '교과목별이수 인정평가'를 실시한다.
- 라.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입학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마.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NEIS 학적처리 포함)은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 학년결정 입학절차 (예시)



#### 6.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 및 내용은 해당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포함한다.
- 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일반고의 경우 국어, 사회(또는 과학), 수학, 영어 교과별로 1개 이상 과목(총 4과목 이상)에 대한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단,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 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대체 가능하며, 사회(또는 과학) 교과의 경우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 신청자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 다. 지필평가 내용,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 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기준 및 불합격 기준 등은 해당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마. 심의 및 평가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간 보관한다.

### 7.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 학습 경험 기준

- 가.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습은 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 나.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시수를 합산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심의 기준 근거]

- 학기 평균 13주
  - 190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2/3(정규학교 학년수로 기준)=127일
  - 127일÷5일(주당 수업일) = 25.4(연간, 학기당 12.7주)
- 주 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 =20시수

### 8.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

- 가.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결정 입학 가능 학생 수를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나. 해당 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신청자 수가 입학 가능 학생 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수의 입학 신청자 모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했다하더라도 일부 입학신청자에게만 입학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과락 및 불합격 기준은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 또는 학교의 각종 규정에 반영하여 학교 알리미를 통해 공시한다.

(별지4)

## 고입전형 일반고 합격자 중 입학 전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업무처리요령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하여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이하 선배정원서)에 학교장 확인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해당 시·도로의 거주지(전가족) 이전 여부 확인
2. 전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입학 전 학교배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입학 전에 선배정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며, 입학 전 배정하는 시·도인 경우에도 교육감입학전형 일반고에 한해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3. 선배정원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장 직인 날인(선배정원서 서식은 해당 시·도에서 제공받아 사용)

#### ※ 유의 사항

- 선배정 원서 제출자가 요건 미비로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
- 위의 업무처리 요령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시·도에 따라 입학전 선배정 후 전학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교육청에 문의할 것 - 서울특별시 등

(별지5)

##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일반고 합격자) 중 강원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입학 안내

### 1. 목적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 가족의 거주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되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고등학교 입학식 전에 입학 수속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의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조성 및 새로운 환경에의 신속한 적응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 등의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 2. 근거

- 가. 시도교육청 중등장학담당장학관 회의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10-391, 1999.11.22.)
- 나.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 3. 절차안내

- 가. 접수시기 : 강원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전형 계획의 일정에 따름
- 나. 접수대상 :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된 자)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출신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 고등학교 입학 자격검정 고시 합격자 중 출신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 ※ ‘전 가족의 거주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된 자’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다. 접수장소

구분	장소
평준화지역(춘천, 원주, 강릉)	학교군별 교육지원청(춘천, 원주, 강릉)
비평준화지역(학교장입학전형지역)	이전된 거주지 소재 <b>전입 희망 고등학교</b>

※ 평준화지역 추첨 및 배정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전형 계획의 일정에 따름

### 4. 제출서류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강원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학부모·학생-고입자료실에 탑재)
- 나.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미제출)

### 5. 기타 사항

- 가.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음  
(단, 원주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의 자녀는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별지6)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

1. 적용 대상: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춘천, 원주, 강릉)

※ 교육감입학전형 지역 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문막고, 원주삼육고, 주문진고)는 학교장입학전형지역의 지침을 따름

2. 배정 원칙(선지원 후추첨 방식)

가. 전입학 지원자는 학년별·정원내외별·남녀별로 구분 접수하고,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인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VII. 전·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범위에 따라 배정한다.

단, ① 2월중 타시·도 전입학 지원자

② 학년(학기)초 타시·도 및 타시·군 전입학 지원자

③ 주소지 변동 없이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전입학 지원자

에 대한 배정절차는 교육지원청별 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나.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연도에 동일지역으로 전학할 때에는 당초 배정되었던 학교에 배정한다.(단, 학교별 결원 현황을 고려함)

다. 교육감입학전형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동일지역 관내 고등학교로 전입학할 수 없으나, 교육감입학전형 지역의 고등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⑤항에 의거, 동일 학교군내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별도의 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2)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라. 다음의 전입생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우선 배정한다.

2) 지체장애인 : 지체부자유의 정도를 감안하고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3) 가정위탁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 시설입소아동) : 거주지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 : 거주지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5) 동일 학년도에 입학할 희망하는 쌍생아, 다생아 또는 형제자매 : 거주지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6) 세 자녀 이상 동일 학교군 고등학교 전학 : 거주지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7) 국가유공자 자녀 : 거주지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8)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 거주지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근거리 고등학교 결정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따름

마. 배제배정 대상자는 원거리 학교를 배제하고 배정할 수 있다. [배제배정 대상자 선정은 고등학교입학전형의 배제배정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함]

바. 추첨 배정은 3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로 한다.

3. 배정 절차

가.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수시

나. 배정원서 교부, 접수, 학교배정 : 지역별 교육지원청

1) 춘천지역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033-259-1605)

2) 원주지역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033-760-5623)

3) 강릉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033-640-1233)

4)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배정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배정 학교에 문서로 통지한다.

다. 학교배정 시기

1) 2월중 타시·도 입학전 전입 학생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입학전형에 따름

2) 학년(학기) 시작일 전입학 신청학생 : 교육지원청별 전학생 배정방법 안내에 따름

3) 학년 중 전입학 신청학생 : 수시 배정하되 학교의 성적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1, 7, 12월에는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은 전입 요청 인원에 따라 주1회, 또는 월 2회 등으로 배정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가. 기본 서류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전 가족이 이주할 수 없는 경우: X.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참조
- 나.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증명서 1부
- 다. 가정위탁보호(소년소녀가정, 시설입소) 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 증명서 1부
- 마. 동일 학년도에 입학할 희망하는 쌍생아, 다생아 또는 형제자매
  -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바. 세 자녀 이상 동일 학교군 고등학교 전학
  -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세 자녀의 재학증명서 각 1부
- 사.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아.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X.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3.)과 동일
- 자.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확인서 1부

5. 기타

- 가. 전입생 배정 학교장은 배정받은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거주지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편입학 취소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 재적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서로 알린다.)
- 나. 학교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전입학 포기자로 간주 처리하여 학교 배정을 취소하고, 당해 학년도에는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등록포기 사실을 전 재적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서로 알린다.)
- 다.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장은 재적 변동시 즉시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재적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정원 관리 철저)
- 라. 원재적교로 재(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원재적교의 학교장은 별도의 배정 절차 없이 재(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서식1)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강원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지원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접 수 일	. . .	
					접수번호		
보호자	성 명	(인)	학생과의 관 계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 전화 번호		
				핸드폰			
타 시·도 고등 학교 입학 예정 사실 증명	본교 외에 다른 고등학교 전입자 입학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위 지원자는 본교 20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학 수속(등록)을 마친, 신입생으로 배정된]자로서, 귀 고등학교 지원에 동의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학교주소 : (우편번호 )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입 학 희망원	위 지원자는 20 년 2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20 학년도 신 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학 수속(등록)을 마친,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중학교장(직인)						
	학교주소 : (우편번호 )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상기와 같이 거주지가 이전되어 귀 고등학교(교육지원청)에 입학할 희망하 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 고등학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2)

### 재(전·편)입학 지원서

지원자	주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제적기간	20년 월 일 입학 20년 월 일 제 학년까지		제적사유		
	주소					
보호자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전화	( ) -		
	제 학년에 재(전·편)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3)

### 신입학 지원서

지원자	성명	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출신 중학교명	년 월 일 (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 )도 고입검정고시 합격				
	주소					
	전형이후 지원사유					
	주소					
보호자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전화	( ) -		
	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지원하오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 학년초부터 5월말(당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입학 등의 허가)
- 동시행령 제67조(입학시기 등)
- 동시행령 제92조(준용)

(서식4)

### 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

고등학교  
제 학년 반  
성명 :

귀교에 재학중인 ( )은(는) ( )사정으로 인하여  
본교 전(편)입을 희망하므로 전(편)입학 서류 일체를 구비해 올 경우 전  
입을 허가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5)

### 고등학교 (신 · 편)입학 신청서(귀국자, 외국인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제3항 각호 해당자 - 귀국학생 등)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국내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학력사항		국내학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거주국 제3국	정규 학교 여부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관계	성명 (생년월일)	거주국	거주시기 (기간)	여권발급시기 (유효기간)	재외국민등록 시기(기간)	체류기간		직업	비고
						거주국	제3국		
본인	<del>                    </del>		- (년 개월 일)	- (. . .)	- (년 개월 일)			<del>                    </del>	
부			- (년 개월 일)	- (. . .)	- (년 개월 일)			<del>                    </del>	
모			- (년 개월 일)	- (. . .)	- (년 개월 일)			<del>                    </del>	

귀 고등학교에 (신 · 편)입학하고자 첨부 서류를 갖추어 고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보호자 \_\_\_\_\_ (인)

① ( )고등학교장 귀하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①, ② 중 해당 학교장 및 교육감으로 신청

※ 작성 요령 참조





(서식9\_1)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명	
전학대상자	주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요청기간	전학사유					
보호자	성명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전입희망지역 및 학교명 <small>(희망지역에 필히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정시 참고사항입니다.)</small>	희망순위	지역명		학교명			
	①						
	②						
	③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전학 요청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학교장 (직인)</p> <p><b>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b></p>							

※ '전입희망지역 및 학교명' 작성시 학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입희망지역만 작성하세요

(서식9\_2)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명	
전학대상자	주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요청기간	전학사유					
보호자	성명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전입희망지역 및 학교명 <small>(희망지역에 필히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정시 참고사항입니다.)</small>	희망순위	지역명		학교명			
	①						
	②						
	③						
<p>「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학 요청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학교장 (직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사인)</p> <p><b>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b></p>							

※ '전입희망지역 및 학교명' 작성시 학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입희망지역만 작성

(서식10\_1)

## 학 교 장 의 견 서

본교에 재학중인 (제 학년 반 번, 성명: )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 전입학 요청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 학교에 우선하여 전입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10\_2)

## 학 교 장 의 견 서

본교에 재학중인 (제 학년 반 번, 성명: )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 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본교 전입학 요청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 학교에 우선하여 전입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11)

###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대상자	주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교육 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위 학생을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고 등 학 교장 (직 인) (사인)						
① ( 비평준화 및 특성화 )고등학교장 귀하						
② (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①, ② 중 해당 학교장 및 교육장으로 추천						

(서식12)

### 보호자 및 학생 동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거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본인(제 학년 반 번, 성명: )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학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 (인)

보호자 : (인)

※ 보호자 1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13\_1)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학교 배정결과통지서

전학대상자	현재소속교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학사유			배정일자	
보호자	성명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배정결과	교부번호	배정학교명		비고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입학 학교 배정 결과를 알려드리니 전입학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직인)</b></p>					

(서식13\_2)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학교 배정결과통지서

전학대상자	현재소속교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학사유			배정일자	
보호자	성명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배정결과	교부번호	배정학교명		비고	
<p>「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입학 학교 배정 결과를 알려드리니 전입학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직인)</b></p>					

